##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

2017. 11. 16. 제정 2020. 12. 10. 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(이하 "연구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사업) 연구센터는 혼성계면 화학구조 화합물에 대한 개발 및 응용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혼성계면 상호작용 이해에 관한 공동·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
  - 2. 연구기기, 시설, 기반기술,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
  - 3.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 관련 세미나, 워크숍, 심포지움 개최
  - 4.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
  - 5.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
  - 6. 대학원생, 교수,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관련 기술 교육
  - 7. 연구연보 발간, 홈페이지 연구 관련 정보 구축
  - 8.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- 제3조(소장, 부소장) ① 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  -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
  -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제4조(조직) ① 연구센터에 제1연구팀, 제2연구팀, 제3연구팀 및 행정실을 둔다.
  - ② 제1연구팀은 계면 설계 화학구조 합성 연구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.
  - ③ 제2연구팀은 플라즈모닉 계면제어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.
  - ④ 제3연구팀은 계면화학 메커니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- ⑤ 행정실은 기획, 학술, 재정, 홍보, 국제산학협력, 서무 회계 및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- 제5조(팀장)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.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② 각 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6조(연구위원 등) ①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12.10.>
  -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

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-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-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-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8조(연구교수) 연구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소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면한다.

제9조(행정인력) ①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- ②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
- 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  -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  - 2.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- 3.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- 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  - 5.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  -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⑥ 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사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의 결정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- 제11조(실무위원회) ① 연구센터의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, 연구 참여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실무위원회는 소장 및 연구센터의 참여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소장은 매월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  - 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6월로 한다.
- 제12조(자문위원회) 연구센터의 중요정책사항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

둔다.

- 제13조(평가위원회) ① 연구센터 중요사업의 진행상황평가, 중요사업성과의 분석, 운영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.
  - ② 평가위원회는 연구센터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다.
  - ③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14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  - 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  - 3. 운영위원 명단
- 제15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연구센터 기금, 한국연구재단 지원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연구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- 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8.6.20.>

부 칙(2017. 11. 16. 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12. 1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